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Korea Ltd.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고객용)

2023. 4. 1 기준



Contents

1. 범위	3
2. 수수료	4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 승용차, 상용차	4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4
2.3. 일부 상환 수수료	5
2.4. 승계 수수료	6
2.5. 신차 대차 기준에 따라,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7
3. 수수료감면기준 및 권한	10
3.1. 중도상환수수료(할부) 및 규정손해배상금(리스) 감면	10



1. 범위

적용 시기	2021. 7. 15 일부터 적용		
적용 기준	금융상품	프로그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금융 ▪ 금융리스 ▪ 운용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 대차 ▪ 차량 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 프로세스 및 시스템 관련 이슈 발생시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상환 • 일부상환 •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 감면 에 따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 감면에 따른 환급
내용 근거	영업 운영 상품	각 상품 및 Program 에 따른 내부 승인에 따른 운영 기준	본 문서의 감면 승인 내용 및 Regulatory requirement
주관 부서	P&C	Sales	OPS

본 문서는 MBFSK 의 상품의 변경에 따라, 각 상품의 변경 시점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리 하고, 각 업무 유관 부서에서 전달 받은 상품 및 Event 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정리함으로써, 고객응대직원 및 Operation 팀에 업무 혼선이 없도록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문서의 내용은 상품별 약정내용 (Product Terms and Condition), Pricing committee 등 Management 의 의사 결정 사항에 기반하여, 해당 문서의 승인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 하고, 승인 절차를 수행 해야 한다.

각 근거 문서는 요청 부서에서 관리 해야 하며, 내부 감사 등 본 문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 할 경우, 요청 부서에서 제시 해야 한다.

새로운 상품 개발로 인하여 적정한 내부 승인 문서를 기반하여 감면 적용 범위 등이 변경 될 경우, 본 문서에 없더라도 변경 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2. 수수료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 승용차, 상용차

실행일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미 회수 원금 × 1% + 미 회수 원금 × (2% : 수수료율 - 1%)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 일)]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미 회수 원금 × (2%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 일)]

* 30 일 이내 상환 시, 대출기간을 30 일로 간주한다.

**무이자할부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2.2.1. 금융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규정손해배상금과 일부 상환 수수료

계약 실행 일자	2015년 1월 1일 이후 ~ 2019년 10월 31일 까지 실행 (a)	2019년 11월 1일 이후 (b)
규정손해배상금	c. 상환 일자 기준 미 회수 원금 × 2% (수수료율) d. 잔여 이자의 총액 → (c)와 (d)를 비교 하여,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상환 일자 기준 미 회수 원금 × 2%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승계계약건의 적용 기준	승계된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승계 일자를 “계약실행일자”로 기준하여, “규정손해배상금”계산식으로 산정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월 1일 이후 ~ 2019년 10월 31일 실행 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a)와 (b)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양수] (b)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잔여리스료와 잔존 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합니다. 	



2.2.2. 운용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 손해배상금

2019년 10월 31일 까지 계약 (e)			2019년 11월 01일 이후 계약 (f)	2023년 4월 1일 이후 계약 (g)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차량 반납 선택)	계약 실행 후 1년 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40%	미 회수 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40%) ×(잔여개월수/전체개월수)	미 회수 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80%) ×(잔여개월수/전체개월수)
	계약 실행 후 1년이상 2년 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30%		
	계약 실행 후 2년이상	차량가격의 20%		
규정 손해배상금 (차량 양수 선택)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회 초과	미회수원금의 10%	미 회수 원금 × 규정손해배상금율(15%)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회 이내	잔여기간 이자		
승계계약건의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납] (g)의 경우만, 최초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로 적용 된다. ● [양수] 승계 일자를 “계약실행일자”로 기준하여, “규정손해배상금”계산식으로 산정 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31일까지 실행 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e)와 (f)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 [반납] (f) 와 (g) 의 경우, 리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한다. ● [양수] (f) 와 (g) 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잔여리스료와 잔존 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한다. 			

2.3. 일부 상환 수수료

할부금융 - 승용차, 상용차	금융리스	운용리스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승용차, 상용차 기준과 동일	2.2.1 금융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규정손해배상금과 일부 상환 수수료 기준과 동일	해당사항 없음 (원금 일부 상환 불가)



2.4. 승계 수수료

계약의 승계는 금융 계약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월 납입액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즉, 월납입회차가 남아있지 않은 금융 계약은 승계가 불가능하다. (승계 수수료는 전 차주에게 부과한다)

PC/CV	금융상품	승계 진행 조건	승계 수수료	
상용차	할부금융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 - 법인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 - 법인의 보증인이 법인대표 였으나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보증인 변경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면제	
	승용차	금융리스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 원
			CPO 가 승계 받는 경우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90,000 원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면제
	운용리스	운용리스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최소 승계 수수료: 400,000 원 최대 승계 수수료: 2,000,000 원
			CPO 가 승계 받는 경우	400,000 원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사망자 승계 시: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 개월 이후 승계 시 200,000 원



2.5. 신차 대차 기준에 따라,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2.5 에 정의된 “신차 대차 금융 계약 시”라 함은

- i) 계약자가 신차를 추가 구매하면서 새로운 금융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의 중도 상환 일이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하면 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환불)한다.
 - ii) 계약자가 신차를 추가 구매하면서 새로운 금융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을 제 3 자에게 승계하고, 기존 계약을 승계 받은 제 3 자(중고차매매상을 포함)가 계약을 중도상환 할 경우,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하면 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환불)한다.
- 단, 새로운 금융 계약 실행일로 부터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일이 3 개월을 초과 하면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에 정의된 규정손해배상금이 적용된다.
- 2.5 에 해당하여, 감면 및 환불 금액이 발생 할 경우, 별도의 내부 승인 없이, 부서에서 해당 금액의 검증 후, 정산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iii) 재리스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작일(재리스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iv) 승계 계약의 경우 승계일을 계약 시작일로 한다.

2.5.1. 신차 금융 계약이 일반 상품 (리텐션 2.0 이 아닐 경우)을 따를 경우,

2.5.1.1. 기존 계약이 할부 금융과 금융 리스 상품일 경우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와 2.2.1 금융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규정손해배상금과 일부 상환 수수료 에 따른다.

2.5.1.2. 기존 계약이 운용 리스 상품일 경우의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계약 실행 후 1 년 또는 12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6%
계약 실행 후 1 년 또는 12 회차 이상 2 년 또는 24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4%
계약 실행 후 2 년 또는 24 회차 이상 3 년 또는 36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3%
계약 실행 후 3 년 또는 36 회차 이상	미회수원금의 2%
만기 4 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적용 예시]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Korea Ltd. | 10th Fl., Seoul Square Building, 416, Hangang-daero, Jung-gu, Seoul, 04637, Republic of Korea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0 층 ☎ 04637



2.2.2.운용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 손해배상금 (a)			2.5.1.2. 신차대차 (b)		
	2019년 11월 01일 이전 계약	2019년 11월 01일 이후 계약	기존계약이 운용리스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규정 손해배상금(차량양수 선택)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회 초과	미회수원금의 10%	미 회수 원금 × 규정손해배상금율(15%)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계약 실행 후 1년 또는 12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6%
				계약 실행 후 1년 또는 12회차 이상 2년 또는 24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4%
				계약 실행 후 2년 또는 24회차 이상 3년 또는 36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3%
				계약 실행 후 3년 또는 36회차 이상	미회수원금의 2%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회 이내	잔여기간 이자		만기 4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 신규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계약 실행이 확인된 후 (기존 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 또는 환불 한다. 단, 기존에 납부 한 금액(a)이 (b) 금액 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환불 절차는 없다.



2.5.2. Retention 2.0 프로그램 (구. 키투키와 리텐션 상품의 결합 상품) 에 의한 신차대차금융계약 진행 시,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 손해 배상금

계약자가 리텐션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차를 추가 구매하면서 새로운 금융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의 중도 상환 (운용리스상품의 경우, 양수 선택 시에만 적용)시, 기존 계약이 12 개월 이상 유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과 여부를 따른다.

기존 계약을 CPO 가 승계 받고, 승계 받은 계약을 CPO 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12 개월 이상 유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승계수수료는 아래의 감면 기준으로 적용 된다.

재리스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작일(재리스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승계 계약의 경우 승계일을 계약 시작일로 한다.

기존 계약	할부 금융 & 금융리스		운용리스	
	중도상환수수료(할부) 규정손해배상금(리스)	승계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할부) 규정손해배상금(리스)	승계 수수료
계약 실행 후 1 년이상 또는 12 회 이상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CPO 가 승계 받은 후, 중도 상환 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NA	CPO 가 승계 받은 후, 중도 상환 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2.5.1.2 기존 계약이 운용 리스 상품일 경우의 규정손해배상금	NA
계약 실행 후 1 년 미만 또는 12 회 미만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CPO 로 승계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기존 승계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2.4. 승계 수수료)	2.5.1.2 기존 계약이 운용 리스 상품일 경우의 규정손해배상금	CPO 로 승계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기존 승계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2.4. 승계 수수료)



3. 수수료감면기준 및 권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3.1. 중도상환수수료(할부) 및 규정손해배상금(리스) 감면

승인 요청 금액 산정 기준	구비서류	승인권한구분	승인권자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사망자의 채무를 중도상환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리스), 중도상환수수료(할부), 연체이자 면제 (단, 운용리스의 경우 본인 양수의 경우만 해당)	사망 확인서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지원팀장
자연재해 또는 고객 과실 50% 미만의 사고로 인한 전손-기초 수익 율(IRR) 을 충족하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	보험사 전손 공문	기초 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End IR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지원 팀장 Head of Operations
리스 계약은 고객 무과실(0%)의 사고로 인한 전손 - 2018 년 7 월 1 일까지 계약 -기초 수익 율(IRR) 을 충족하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			
리스 계약은 고객 무과실(0%)의 사고로 인한 전손 - 2018 년 7 월 2 일부터 실행된 계약은 규정손해배상금을 전액 면제			
차량 결함, 레몬 법에 의한 제조사 및 판매사에서 차량 교환 및 환불 대상 확정 -기초 수익 율(IRR)을 충족시키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	제조사 확인서 딜러사 요청 공문	기초 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End IR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d of Operations
		기초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 (End IRR)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d of Operations CFO

*“종료 수익 율(End IRR)” 은 계약의 종료요청일자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율(IRR) 이다